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53
----------	-----

발의연월일 : 2016. 7. 13.

발의자 : 박정·신경민·박광온
윤후덕·이찬열·최경환국
김현권·서형수·황주홍
김정우·송영길·원혜영
임종성·정성호·어기구
전혜숙·박남춘·김병욱
김삼화·소병훈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공공구매제도를 두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제도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제도를 두고 있음.

이처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다양하고 여러 법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다 보니, 각종 공공구매제도 간에 경합이 생기고 공공구매업무 실무를 집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는 등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실적의 작성 요령,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공공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중소기업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실적의 작성 요령(실적의 중복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중복 계산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3조의2(공공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중소기업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의 이행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계획·실적의 작성 요령(실적의 중복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중복 계산된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야 한다.</p>